◉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7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의 수출가격 수정(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 * * *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 * * * * * * * * * * * * 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 * * * *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 * * * * *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 * * * *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 *	* *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 *	* * *	* * *
	0.5㎜ 이상 1.0㎜ 이하	* * *	* * *	* * *	* * *
	0.5㎜ 미만	* * *	* * *	* *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 * * *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 * * *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적용한다.

2021년 4/4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2021년 7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2. 대상기간: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 달러/MT)

송장 일자	송장 번호	고객 사명	선적 일자	제품	계열	강종	CIF 가격	수출 물량	누적 수출물량
yy-mm-dd	xxx	xxx	yy-mm-dd	열연/냉연	300계	304L	xxx	xxx	xxx

(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물량 및 가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6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의 수출가격 수정(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이예마우(Yieh Mau Corp.),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 * * *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 * * * * * * * * * * * * 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 * * * *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 * * * * *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

(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 * * * *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

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 *	* *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 *	* * *	* * *
	0.5㎜ 이상 1.0㎜ 이하	* * *	* * *	* * *	* * *
	0.5㎜ 미만	* * *	* * *	* *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 * * *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 * * *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적용한다.

2021년 4/4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2021년 7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2. 대상기간: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 달러/MT)

송장 일자	송장 번호	고객 사명	선적 일자	제품	계열	강종	CIF 가격	수출 물량	누적 수출물량
yy-mm-dd	xxx	xxx	yy-mm-dd	열연/냉연	300계	304L	xxx	xxx	xxx

(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물량 및 가격

Decree No. 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REGULATION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ON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RIGIN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Article 1 (Objective) The objectives of this regulation are to designate the products and the suppliers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and to determine the rate of the anti-dumping duty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Customs Act.

Article 2 (Products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The products of which thickness is 8 millimeters or less among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HSK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according to Article 98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are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provided that, items listed in [Annex No.1] are excluded from products subject to the imposition.

Article 3 (Suppliers subject to this Regulation) Suppliers who a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under this regulation are the suppliers of the products referred to in Article 2. Nevertheless, suppli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ttached [Annex No.2] who have accepted the Price Undertaking under Article 54 of Customs Act shall be excluded from the supplier subject to the imposition. But if the Price Undertaking is not fulfilled, the anti-dumping duty will be imposed.

Article 4 (Anti-Dumping Duty Rate) The rates of the anti-dumping duty are as specified in [Annex No.23]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paragraph 1 and the proviso to Article 3 paragraph 2.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Effective Period)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regulation is promulgated.

Article 3 (Applicability to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products for which import is declared after enforcement of this regulation.

[ANNEX No.1]

Products excluded from the products subject to imposition on this regulation

1.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s Standard S31254 and N08367 grade steel products
2. 200 types of Nickel-based products with a nickel content of less than 6% and a manganese content of 3%, which refers to product under HSK 7219.12.1010, 7219.13.1010, 7219.14.1010, 7219.22.1010, 7219.23.1010, 7219.24.1010, 7219.31.1010, 7219.32.1010, 7219.33.1010, 7219.34.1010, 7219.35.1010, 7219.90.1010, 7220.11.1010, 7220.12.1010, 7220.20.1010, 7220.90.1010 according to Article 98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3. Hot-rolled products with a width of 2,000 millimeters or more.
4. Hot-rolled 316 of 316L grade steel products with a thickness of more than 3 millimeters and less than 4 millimeters and a width of more than 1,524 millimeters.
5. Chinese national Standard(GB) 2Cr13, 3Cr13, 4Cr13, 6Cr13 steel with a thickness of 3 millimeters or less and a width of 400 millimeters or less, and has a hardness of HV 250 to 350
6. Products that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 content of Carbon(C) is 0.015% or less of the total weight;
   b. The content of silicon(si) is 0.3% to 0.6% of the total weight;
   c. The content of manganese(Mn) is 0.9% to 1.3% of the total weight;
   d. The content of Phosphorus(P) is 0.013% or less of the total weight;
   e. The content of sulfur(S) is 0.005% of less of the total weight;
   f. The content of Nickel(Ni) is 10.0% to 11.5% of the total weight;
   g. The content of Chromium(Cr) is 18.0% to 19.5% of the total weight;
   h. The content of Molybdenum(Mo) is 0.3% or less of the total weight;
   i. The content of Copper(Cu) is 0.01% or less of the total weight;
   j. The content of Nitrogen(N) is 0.025% or less of the total weight; and
   k. The thickness is 0.34 millimeters to 0.36 millimeters.

[ANNEX No.2]

Suppliers excluded from the supplier subject to this regulation

1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and following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1.1. TIS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1.2. TISCO Trading (H.K.) LTD.
1.3. 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

2.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3.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and following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3.1. 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3.2. 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3.3. ETERNAL TSINGSHAN GROUP LIMITED
3.4. 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

4.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and following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4.1. Yieh Mau Corp.
4.2. Tang Eng Iron Works Co., Ltd.
4.3. Yieh Corporation Limited

5. Walsin Lihwa Corporation

[ANNEX No.3]

Anti-dumping duty rates

Country	Suppliers	Duty Rates (%)
China	1.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and following suppliers 1.1. 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1.2.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23.69
	2.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25.82
	3. Other suppliers	24.83
Indonesia	4.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and following suppliers 4.1. 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4.2. 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25.82
	5. Other suppliers	25.82
Chinese Taipei	6.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and following suppliers 6.1. Yieh Mau Corp. 6.2. Tang Eng Iron Works Co., Ltd.	9.47
	7. Walsin Lihwa Corporation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Walsin Lihwa Corporation	7.17
	8. Other suppliers	9.07

Footnote) If suppliers who are classified as “other suppliers” have special relationships specified in Article 23 paragraph 1 of「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ustoms Act」with the suppliers specified above, “other suppliers” a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applied to the supplier with which they have special relationships.

* This document is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official Decree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No. 865), which i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only for the purpose of notification for the supplying countries or suppliers of the goods at issu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477 Galmae-ro,
Government Complex
Sejong city,
Korea/30109
(Tel)82-44-215-4432
(Fax)82-44-215-8076

September 15, 2021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Korea

27, myeongdong 2-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code), I would like to hereby inform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termined to impos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Customs Act.

Attached herewith is a translation of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is issued upon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It would be grateful if you make the Decree known to relevant authorit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st Regards,

Jeong Hyoung
Director
Industrial Tariff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Attachment>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477 Galmae-ro,
Government Complex
Sejong city,
Korea/30109
(Tel)82-44-215-4432
(Fax)82-44-215-8076

September 15, 2021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the Republic of Korea

380, Yeouidaebangro,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code), I would like to hereby inform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termined to impos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Customs Act.

Attached herewith is a translation of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is issued upon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It would be grateful if you make the Decree known to relevant authorit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st Regards,

Jeong Hyoung
Director
Industrial Tariff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Attachment>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477 Galmae-ro,
Government Complex
Sejong city,
Korea/30109
(Tel)82-44-215-4432
(Fax)82-44-215-8076

September 15, 2021

Embassy of Chinese Taipei in Seoul

6th Fl., Gwanghwamun Bldg.,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code), I would like to hereby inform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termined to impos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Customs Act.

Attached herewith is a translation of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is issued upon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It would be grateful if you make the Decree known to relevant authorit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st Regards,

Jeong Hyoung
Director
Industrial Tariff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Attachment>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檔號	/ /	保存年限	

駐韓國代表處經濟組　函

機關地址：03186首爾市鍾路區世宗大路
149號光化門大廈6樓
承辦人：張倫嘉
電話：82-2-6329-6052
傳真：82-2-6329-6057
Email：korea@moea.gov.tw

受文者：經濟部國際貿易局

裝

發文日期：中華民國110年9月15日
發文字號：韓經字第1100915021號
速別：最速件
密等及解密條件或保密期限：
附件：如文　（韓經1100915021_Attach1.pdf, 韓經1100915021_Attach2.pdf, 韓經1100915021_Attach3.pdf, 韓經1100915021_Attach4.pdf, 韓經1100915021_Attach5.pdf, 韓經1100915021_Attach6.pdf, 韓經1100915021_Attach7.pdf）

主旨：有關韓國決定對我國、中國大陸及印尼產製不銹鋼板捲課徵反傾銷關稅及接受價格具結事，謹報請鑒察。

訂

說明：

一、依據韓國企劃財政部（Ministry of Economic and Finance）本（110）年9月15日電子郵件辦理。

二、該部產業關稅課本（15）日電郵表示，依據WTO反傾銷協定第12.2條，對於旨揭貨品，訂定「課徵反傾銷關稅規定」及「出口價格具結公告」。

三、查我國涉案廠商部分，據「第2021-26號」公告，該部接受燁聯鋼鐵股份有限公司，據韓國關稅法第51條第1項規定，提出之出口價格具結申請；另據「第2021-27號」公告，該部接受華新麗華股份有限公司，據韓國關稅法第51條第1項規定，提出之出口價格具結申請。

線

四、並檢送相關資料如次：

(一)決定課徵反傾銷關稅英文通知函(如附件1)；

國際貿易局　110/09/16

1107029995

(二)課徵反傾銷關稅規定(英文版；如附件2)；

(三)課徵反傾銷關稅規定(韓文版；如附件3)；

(四)價格具結公告「第2021-26號」(燁聯、公開版；如附件4)；

(五)價格具結公告「第2021-26號」(燁聯、非公開版；如附件5)；

(六)價格具結公告「第2021-27號」(華新麗華、公開版；如附件6)；

(七)價格具結公告「第2021-27號」(華新麗華、非公開版；如附件7)。

五、檢附上述7件附件資料，敬請協助轉知我相關廠商。

正本：經濟部國際貿易局
副本：經濟部國際貿易局雙邊貿易一組 電子公文交換章 2021/09/16 10:04:08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7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의 수출가격 수정(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 * * *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 * * * * * * * * * * * * 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 * * * *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 * * * * *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 * * * *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 *	* *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 *	* * *	* * *
	0.5㎜ 이상 1.0㎜ 이하	* * *	* * *	* * *	* * *
	0.5㎜ 미만	* * *	* * *	* *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 * * *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 * * *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적용한다.

2021년 4/4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2021년 7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2. 대상기간: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 달러/MT)

송장 일자	송장 번호	고객 사명	선적 일자	제품	계열	강종	CIF 가격	수출 물량	누적 수출물량
yy-mm-dd	xxx	xxx	yy-mm-dd	열연/냉연	300계	304L	xxx	xxx	xxx

(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물량 및 가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6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의 수출가격 수정(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이예마우(Yieh Mau Corp.),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 * * *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 * * * * * * * * * * * * 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 * * * *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 * * * * *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

(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 * * * *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

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 *	* *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 *	* * *	* * *
	0.5㎜ 이상 1.0㎜ 이하	* * *	* * *	* * *	* * *
	0.5㎜ 미만	* * *	* * *	* *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 * * *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 * * *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적용한다.

2021년 4/4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2021년 7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2. 대상기간: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 달러/MT)

송장 일자	송장 번호	고객 사명	선적 일자	제품	계열	강종	CIF 가격	수출 물량	누적 수출물량
yy-mm-dd	xxx	xxx	yy-mm-dd	열연/냉연	300계	304L	xxx	xxx	xxx

(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물량 및 가격

Decree No. 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REGULATION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ON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RIGIN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Article 1 (Objective) The objectives of this regulation are to designate the products and the suppliers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and to determine the rate of the anti-dumping duty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Customs Act.

Article 2 (Products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The products of which thickness is 8 millimeters or less among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HSK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according to Article 98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are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provided that, items listed in [Annex No.1] are excluded from products subject to the imposition.

Article 3 (Suppliers subject to this Regulation) Suppliers who a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under this regulation are the suppliers of the products referred to in Article 2. Nevertheless, suppli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ttached [Annex No.2] who have accepted the Price Undertaking under Article 54 of Customs Act shall be excluded from the supplier subject to the imposition. But if the Price Undertaking is not fulfilled, the anti-dumping duty will be imposed.

Article 4 (Anti-Dumping Duty Rate) The rates of the anti-dumping duty are as specified in [Annex No.23]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paragraph 1 and the proviso to Article 3 paragraph 2.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Effective Period)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regulation is promulgated.

Article 3 (Applicability to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products for which import is declared after enforcement of this regulation.

[ANNEX No.1]

Products excluded from the products subject to imposition on this regulation

1.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s Standard S31254 and N08367 grade steel products
2. 200 types of Nickel-based products with a nickel content of less than 6% and a manganese content of 3%, which refers to product under HSK 7219.12.1010, 7219.13.1010, 7219.14.1010, 7219.22.1010, 7219.23.1010, 7219.24.1010, 7219.31.1010, 7219.32.1010, 7219.33.1010, 7219.34.1010, 7219.35.1010, 7219.90.1010, 7220.11.1010, 7220.12.1010, 7220.20.1010, 7220.90.1010 according to Article 98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3. Hot-rolled products with a width of 2,000 millimeters or more.
4. Hot-rolled 316 of 316L grade steel products with a thickness of more than 3 millimeters and less than 4 millimeters and a width of more than 1,524 millimeters.
5. Chinese national Standard(GB) 2Cr13, 3Cr13, 4Cr13, 6Cr13 steel with a thickness of 3 millimeters or less and a width of 400 millimeters or less, and has a hardness of HV 250 to 350
6. Products that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 content of Carbon(C) is 0.015% or less of the total weight;
   b. The content of silicon(si) is 0.3% to 0.6% of the total weight;
   c. The content of manganese(Mn) is 0.9% to 1.3% of the total weight;
   d. The content of Phosphorus(P) is 0.013% or less of the total weight;
   e. The content of sulfur(S) is 0.005% of less of the total weight;
   f. The content of Nickel(Ni) is 10.0% to 11.5% of the total weight;
   g. The content of Chromium(Cr) is 18.0% to 19.5% of the total weight;
   h. The content of Molybdenum(Mo) is 0.3% or less of the total weight;
   i. The content of Copper(Cu) is 0.01% or less of the total weight;
   j. The content of Nitrogen(N) is 0.025% or less of the total weight; and
   k. The thickness is 0.34 millimeters to 0.36 millimeters.

[ANNEX No.2]

Suppliers excluded from the supplier subject to this regulation

1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and following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1.1. TIS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1.2. TISCO Trading (H.K.) LTD.
1.3. 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

2.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3.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and following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3.1. 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3.2. 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3.3. ETERNAL TSINGSHAN GROUP LIMITED
3.4. 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

4.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and following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4.1. Yieh Mau Corp.
4.2. Tang Eng Iron Works Co., Ltd.
4.3. Yieh Corporation Limited

5. Walsin Lihwa Corporation

[ANNEX No.3]

Anti-dumping duty rates

Country	Suppliers	Duty Rates (%)
China	1.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and following suppliers 1.1. 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1.2.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23.69
	2.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25.82
	3. Other suppliers	24.83
Indonesia	4.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and following suppliers 4.1. 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4.2. 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25.82
	5. Other suppliers	25.82
Chinese Taipei	6.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and following suppliers 6.1. Yieh Mau Corp. 6.2. Tang Eng Iron Works Co., Ltd.	9.47
	7. Walsin Lihwa Corporation and exporters who export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Walsin Lihwa Corporation	7.17
	8. Other suppliers	9.07

Footnote) If suppliers who are classified as “other suppliers” have special relationships specified in Article 23 paragraph 1 of「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ustoms Act」with the suppliers specified above, “other suppliers” a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applied to the supplier with which they have special relationships.

* This document is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official Decree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No. 865), which i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only for the purpose of notification for the supplying countries or suppliers of the goods at issu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477 Galmae-ro,
Government Complex
Sejong city,
Korea/30109
(Tel)82-44-215-4432
(Fax)82-44-215-8076

September 15, 2021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Korea

27, myeongdong 2-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code), I would like to hereby inform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termined to impos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Customs Act.

Attached herewith is a translation of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is issued upon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It would be grateful if you make the Decree known to relevant authorit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st Regards,

Jeong Hyoung
Director
Industrial Tariff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Attachment>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477 Galmae-ro,
Government Complex
Sejong city,
Korea/30109
(Tel)82-44-215-4432
(Fax)82-44-215-8076

September 15, 2021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the Republic of Korea

380, Yeouidaebangro,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code), I would like to hereby inform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termined to impos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Customs Act.

Attached herewith is a translation of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is issued upon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It would be grateful if you make the Decree known to relevant authorit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st Regards,

Jeong Hyoung
Director
Industrial Tariff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Attachment>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477 Galmae-ro,
Government Complex
Sejong city,
Korea/30109
(Tel)82-44-215-4432
(Fax)82-44-215-8076

September 15, 2021

Embassy of Chinese Taipei in Seoul

6th Fl., Gwanghwamun Bldg.,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code), I would like to hereby inform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termined to impos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Chinese Taipei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Customs Act.

Attached herewith is a translation of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is issued upon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It would be grateful if you make the Decree known to relevant authorit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st Regards,

Jeong Hyoung
Director
Industrial Tariff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Attachment> Decree No.865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